

충청북도 기업 및 외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6년 11월 13일
- 회부일자 : 2006년 11월 13일

3. 제안이유

- 경제특별도 위상에 맞는 활발한 기업투자가 촉진되도록 현행 기업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을 수도권만이 아닌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도내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기업에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 20인 이내(안 제3조 내지 제8조)
-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활용(안 제10조)
 - 컨설팅사, 기업관련 기관, 투자유치 전문회사 등
 - 충청북도 투자자문단 구성 : 30인 이내

- 투자진흥기금 설치(안 제13조 내지 제17조)
- 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안 제27조)
- 타 시 · 도 기업 이전비 지원(안 제28조)
 - 본사이전 :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투자금액의 5%, 2억원까지 지원
 -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 : 토지매입비 및 공장시설 등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5% 범위안에서 50억원까지 지원
※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 각각 2억원까지 지원
- 도내공장 증설시 지원(안 제29조)
 - 토지매입비 또는 기존공장 부지에 공장건축과 시설설치시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5% 범위안에서 50억원까지 지원
-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 (안 제30조)
 - 대 상 : 도내 낙후지역의 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 방 법 : 시장 · 군수와 협의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심의후 지정
 - 지 원 : 토지금액 및 공사시설 금액의 20% 범위안에서 추가 융자 지원
- 지원한도(안 제 32조)
 - 이전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고용보조금 : 50억 원(기업당)
- 특별지원(안 제33조)
 -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한 범위 초과하여 지원 가능
- 시 · 군의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분담(안 제34조)
 - 시장 · 군수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정함

- 투자유치 성공 보상(안 제38조)

- 대상 : 민간인 및 공무원, 단체, 전문가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재정지원 대상이 수도권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도내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타 시·도 및 도내 공장 증설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면개정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다만, 안 제13조의 투자유치진흥기금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여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라 함은 법률·법규명령 및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을 포함한 것이고 개별법령의 특정조항뿐만 아니라 법령의 전체적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이와 모순·저촉되지 않은 법령의 전체적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이와 모순·저촉되지 않은 범위안에서 제정해야 하므로,

2005년 8월 4일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 안 제15조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금고로 일원화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안 제33조의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한 사항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소 탄력적 이긴 하나 자칫 단체장의 재량이 남용될 소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 안 제38조의 투자유치 성공 보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 제정 시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여 재량권 남용 등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 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 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77조(금고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운용·관리) ①통합기금은 통합기금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지사가 운용·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통합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통합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통합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합기금관리관이 지정하는 도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